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9. 19.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223호로 2023년 9월 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집중호우 피해 지원, 무차별 범죄 예방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예산 소요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의 의결을 요청함.

## 3. 주요내용

가. 2023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본예산+간주예산)	증(△)감	증감률(%)
합 계	1,025,517,917	1,024,878,842	639,075	0.06
일반회계	989,436,646	988,797,571	639,075	0.06
특별회계	36,081,271	36,081,271	0	0.00
의료급여	683,646	683,646	0	0.0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54,200	54,200	0	0.00
주 차 장	33,656,615	33,656,615	0	0.00
건축안전	1,686,810	1,686,810	0	0.00

#### 4.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가. 일반회계 ----- 639,075천원

##### 1) 세입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본예산+간주예산)	증(△)감	비 고
계	989,436,646	989,436,646	639,075	
지방세 수입	193,111,153	193,111,153	0	
보통세	192,395,581	192,395,581	0	
지난년도 수입	715,572	715,572	0	
세외수입	81,660,367	81,660,367	0	
경 상 전 세외수입	67,219,150	67,219,150	0	
임 시 전 세외수입	9,495,937	9,495,937	0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4,945,280	4,945,280	0	
지방교부세	19,596,000	19,596,000	0	
조정교부금 등	95,896,475	95,896,475	0	
자 치 구 조정교부금등	95,896,475	95,896,475	0	
보 조 금	381,121,141	380,482,066	639,075	
국고 보조금등	217,747,977	217,583,342	164,635	
시·도비 보조금등	163,373,164	162,898,724	474,44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18,051,510	218,051,510	0	
보전수입 등	218,051,510	218,051,510	0	

2) 세출예산 편성 내역 ----- 639,075천원

● 정책사업비 ----- 3,836,246천원

※ 주요 사업 편성 내역

영등포본동 출입구 상단 보수공사(자치행정과)	43,000 천원
영등포동 자치회관(4층) 다목적 공간 조성(자치행정과)	32,320 천원
신길5구역 학교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미래교육과)	48,000 천원
영등포전국사진공모전 지원(문화체육과)	10,100 천원
종목별 구청장기 대회(테니스)(문화체육과)	5,000 천원
구 생활체육교실 운영(국학기공, 당구교실, 라인댄스)(문화체육과)	12,792 천원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부서 포상(기획예산과)	6,750 천원
풍수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지역경제과)	368,400 천원
안심일자리 사업(보조)(일자리정책과)	457,633 천원
신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보조)(복지정책과) (수영장 여과기, 탈의실 등)	91,056 천원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지원(복지정책과)	12,000 천원
경로당 회장 및 총무 수당지원(어르신·장애인과)	76,500 천원
경로당 전자제품 등 구입(어르신·장애인과)	32,000 천원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보조)(어르신·장애인과)	329,270 천원
공원내 CCTV 설치(푸른도시과)	800,000 천원
어르신과 함께하는 공원환경 관리(푸른도시과)	22,000 천원
시니어 힐링 원예교실 운영(푸른도시과)	10,000 천원
신길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명개선(푸른도시과)	58,000 천원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도시안전과)	200,000 천원
여의초교 앞 지하보도 안심 비상벨 설치(도로과)	60,000 천원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공사(치수과)	1,200,000 천원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교통행정과)	93,000 천원
공동주택 관리지원(경로당 개보수)(주택과)	50,000 천원
경부선일대 종합발전 마스터 플랜 수립(도시계획과)	300,000 천원
기부채납시설 관리방안 마련(도시계획과)	60,000 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보조)(건강증진과)	70,000 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구비)(건강증진과)	24,000 천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건강증진과)	3,500 천원

- 보조금 ----- 639,075천원
  - ▶ 국고보조금등: 164,635천원
  - ▶ 시·도비보조금등: 474,440천원
- 예비비 ----- △ 3,836,246천원
  - ▶ 내부유보금: △ 3,836,246천원

나. 특별회계 ----- 해당사항 없음

## 5.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 가.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총 계	654,403,468	651,009,642	3,393,826	0.52
일반회계	618,322,197	614,928,371	3,393,826	0.55
특별회계	36,081,271	36,081,271	0	0.00

### 나.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총 계	618,322,197	614,928,371	3,393,826	0.55
복 지 국	464,605,582	464,064,756	540,826	0.12
복지정책과	29,446,211	29,343,155	103,056	0.35
생활보장과	79,136,595	79,136,595	0	0.00
보육지원과	158,319,273	158,319,273	0	0.00
아동청소년과	17,451,291	17,451,291	0	0.00
어르신장애인과	180,252,212	179,814,442	437,770	0.24

부 서 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b>생활환경국</b>	<b>76,948,269</b>	<b>76,058,269</b>	<b>890,000</b>	<b>1.17</b>
가로경관과	1,130,770	1,130,770	0	0.00
청 소 과	57,058,459	57,058,459	0	0.00
환 경 과	2,983,341	2,983,341	0	0.00
푸른도시과	15,775,699	14,885,699	890,000	5.98
<b>안전교통국</b>	<b>38,997,707</b>	<b>37,444,707</b>	<b>1,553,000</b>	<b>4.15</b>
도시안전과	5,724,846	5,524,846	200,000	3.62
도 로 과	14,844,197	14,784,197	60,000	0.41
치 수 과	14,618,766	13,418,766	1,200,000	8.94
교통행정과	3,769,783	3,676,783	93,000	2.53
주차문화과	40,115	40,115	0	0.00
<b>도 시 국</b>	<b>37,770,639</b>	<b>37,360,639</b>	<b>410,000</b>	<b>1.10</b>
주 택 과	1,288,740	1,238,740	50,000	4.04
도시계획과	21,021,516	20,661,516	360,000	1.74
주거사업과	1,822,355	1,822,355	0	0.00
건 축 과	13,099,608	13,099,608	0	0.00
부동산정보과	538,420	538,420	0	0.00

다.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b>총 계</b>	<b>36,081,271</b>	<b>36,081,271</b>	<b>0</b>	<b>0.00</b>
생활보장과	683,646	683,646	0	0.00
환 경 과	54,200	54,200	0	0.00
도시안전과	478,820	478,820	0	0.00
주차문화과	33,177,795	33,177,795	0	0.00
건 축 과	1,686,810	1,686,810	0	0.00

라.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1) 일반회계

【 복지국 】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b>총 계</b>	<b>464,605,582</b>	<b>464,064,756</b>	<b>540,826</b>	<b>0.12% 증</b>
복지정책과	29,446,211	29,343,155	103,05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91,056</li> <li>◦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12,000</li> </ul>
생활보장과	79,136,595	79,136,595	0	변동사항 없음
보육지원과	158,319,273	158,319,273	0	변동사항 없음
아동청소년과	17,451,291	17,451,291	0	변동사항 없음
어르신장애인과	180,252,212	179,814,442	437,7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로당 운영지원 108,500</li> <li>◦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329,270</li> </ul>

【 생활환경국 】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b>총 계</b>	<b>76,948,269</b>	<b>76,058,269</b>	<b>890,000</b>	<b>1.17% 증</b>
가로경관과	1,130,770	1,130,770	0	변동사항 없음
청소과	57,058,459	57,058,459	0	변동사항 없음
환경과	2,983,341	2,983,341	0	변동사항 없음
푸른도시과	15,775,699	14,885,699	89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긴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명개선 58,000</li> <li>◦ 어르신과 함께하는 공원 환경관리 22,000</li> <li>◦ 시니어 힐링 원예교실 운영 10,000</li> <li>◦ 공원 내 CCTV설치 800,000</li> </ul>

【 안전교통국 】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b>총 계</b>	<b>38,997,707</b>	<b>37,444,707</b>	<b>1,553,000</b>	<b>4.15% 증</b>
도 시 안 전 과	5,724,846	5,524,846	200,000	◦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 200,000
도 로 과	14,844,197	14,784,197	60,000	◦ 여의초교 앞 지하보도 안심 비상벨 설치 60,000
치 수 과	14,618,766	13,418,766	1,200,000	◦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 사업 1,200,000
교 통 행 정 과	3,769,783	3,676,783	93,000	◦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 93,000
주 차 문 화 과	40,115	40,115	0	변동사항 없음

【 도시국 】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b>총 계</b>	<b>37,770,639</b>	<b>37,360,639</b>	<b>410,000</b>	<b>1.10% 증</b>
주 택 과	1,288,740	1,238,740	50,000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50,000
도 시 계 획 과	21,021,516	20,661,516	360,000	◦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300,000 ◦ 기부채납 시설 관리방안 마련 60,000
주 거 사 업 과	1,822,355	1,822,355	0	변동사항 없음
건 축 과	13,099,608	13,099,608	0	변동사항 없음
부 동 산 정 보 과	538,420	538,420	0	변동사항 없음

## 2) 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내역
<b>총 계</b>	36,081,271	36,081,271	0	0.00% 증
생활 보장 과	683,646	683,646	0	변동사항 없음
환경 과	54,200	54,200	0	변동사항 없음
도시 안전 과	478,820	478,820	0	변동사항 없음
주차 문화 과	33,177,795	33,177,795	0	변동사항 없음
건축 과	1,686,810	1,686,810	0	변동사항 없음

## 6. 검토내용

가.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510억 900만원에서 33억 9,400만원이 증액된 6,544억 300만원으로, 증감률은 0.52%임.

나. 세출예산 국별 주요 편성 내용으로

### 【북지국】

- 북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647억 4,800만원 대비 0.12%인 5억 4,100만원 증가한 4,652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 요인은

- 복지정책과는 서울시 기능보강사업비 통보 등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9,100만원 증액**하였고,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지원을 위한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음.
- **어르신·장애인과는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에서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및 집행정산인 수당으로 7,700만원, 경로당 물품 추가지원으로 3,200만원 편성하여 총 1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산급여 예산변경 확정 통보에 따라 구비 매칭분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활동 지원 가산급여 3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생활환경국】

-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61억 1,200만원 대비 1.17%인 8억 9,000만원 증가한 770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요인은

- 푸른도시과는 신길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전용 조명 미설치로 인하여 이용객의 이용불편 및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배드민턴장 조명개선비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내 공원시설의 청소 및 환경관리를 통해 보건위생 증진과 어르신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르신과 함께하는 공원 환경관리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령화와 독거노인 가구 증가에 따라 소외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관내 경로당에서 원예교실을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일상적인 삶에 활력을 주기 위한 **시니어 힐링 원예교실**

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무차별 범죄 등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원 내 CCTV 미설치 구간에 CCTV를 설치하고자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안전교통국】

-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11억 100만원 대비 2.18%인 15억 5,300만원 증액된 726억 5,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가요인은
  - 도시안전과는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위해 다중인파지역 밀집위험도 시뮬레이션 용역비 및 안전시설 보강비 등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도로과는 유동인구가 적고 폐쇄된 공간으로 강력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여의초교 앞 지하보도에 영등포구 통합상황실과 연계되는 안심비상벨 설치와 CCTV 교체를 위하여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치수과는 지난 7월 강력한 집중호우로 인해 문래동 일대 등에 침수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적인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속형 빗물받이 설치사업으로 1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교통행정과는 관내 마을버스 적자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자치구 분담금으로 9,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 도시국 】

○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0억 4,700만원 대비 1.05%인 4억 1,000만원이 증액된 394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 주요 증감 요인은

-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서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로당 구 분담률이 기존 50%에서 70%로 상향됨에 따라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도시계획과는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의도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대규모 공공기여시설 면적이 발생 예정에 따라 기부채납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기부채납 시설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 용역에 여의도 공공기여시설도 포함시키기 위해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다. 검토의견

### ○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 감액편성을 통한 내부유보금 일부와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구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한 사업과 조례 제·개정에 따른 필요 재원 확보 등을 세입 재원 한도 내에서 선택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임.

- 「지방재정법」 제4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재정법」과 달리 편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으나
- 다가오는 다음 회계연도를 대비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의 시급성,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을 감안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2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